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92

2022년 2월 7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2. 17.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1. 12. 20.

다. 상정 일자 : 제3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22년 2월 7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처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현행화함(안 제1조).

○ 실·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실·담당관 설치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 삭제).

○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4조).

○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을 삭제함(안 제6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○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)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도입됨에 따라,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실·담당관 설치 조항 삭제

○ 현행 조례에 따르면, 사무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 제3조[1]에도 동일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와 규칙 간 중복성을 제거해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실 · 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 · 의정담당관 · 의사담당관 · 시민권익담당관 ·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.	<삭 제>

1) 제3조(하부조직)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장 밑에 언론홍보실장 · 의정담당관 · 의사담당관 · 시민권익담당관 · 입법담당관 ·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, 언론홍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

3 정책지원관 배치와 사무분장 등(안 제4조)

○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[2]에 따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으로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[3]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한 조례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(정책지원관) ①「지방자치법」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"정책지원관"이라 한다)을 사무처에 둔다.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 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
2)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"정책지원전문인력"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	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· 분석 지원 5. 의원의 공청회 · 세미나 · 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· 분석 ·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는다.

○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어 단체장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,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자치법규상 근거조항을 본 조례보다는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에 두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.[4)]

4)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(2021.12.22.)에서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가결된바 있고, 제48조의2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배치규정을 신설함.
제48조의2(의원 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② 의장은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 이상의 의원 정책지원관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4 시장 소속 직원의 의회 근무지원 요청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

○ 현행 조례에 따르면, 의장은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시장에게 집행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2022년 1월 13일부터는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양 기관 소속 공무원은 상호 협의에 의한 교류 형태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<신·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<삭 제>

5 종합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, 정책지원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의원입법이 가능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○ 한편, ‘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’는 부칙조항을 ‘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’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생 략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92

제안년월일 : 2022년 2월 7일
제 안 자 : 운 영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○ 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안 제4조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○ 정책지원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4조 삭제).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○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-----. <삭 제>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실·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시민권익담당관·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.		
제4조 (생 략)	제3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	제3조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제4조(정책지원관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"정책지원관"이라 한다)을 사무처에 둔다.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	<삭 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한다. 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.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	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제5조 (생 략)	제4조 (개정안 제5조와 같음)
제6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<삭 제>	
제7조 (생 략)	제6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	제5조 (개정안 제6조와 같음)
	부 칙	부 칙
	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하고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제5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----------.
제3조(실・담당관의 설치) 처장을 보좌하는 하부조직으로 언론홍보실・의정담당관・의사담당관・시민권익담당관・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둔다.	〈삭 제〉
제4조 (생 략)	제3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
제5조 (생 략)	제4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제6조(직원의 근무지원 요청) 의장은 의회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〈삭 제〉
제7조 (생 략)	제5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